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5.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황교안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행정직류를 신설하고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전직제한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채용후보자 및 시보공무원의 자질 검증을 위한 사유 및 절차를 명시하고 직위해제가 가능한 급품비위 등을 구체화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한 복무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사행정직류 신설 등(안 별표 1)

인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행정직렬 내 ‘인사행정직류’를 신설하고 현행 ‘노동직류’의 명칭을 ‘고용노동직류’로 변경

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시 절차 신설(안 제14조)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채용후보자에 대해 자격상실이 가능하도록 사유를 확대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절차를 신설

- 1 -

다. 시보공무원 자질 검증 강화(안 제23조)

1) 국가공무원법(‘15.11.19 시행)에서 위임한데 따라 시보공무원에 대한 면직 사유를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 미달 또는 퇴학처분,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시보기간 중 중징계 상당, 경징계상당 비위 반복 발생 등의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

2) 시보기간 종료 前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성적, 국가관과 공무원 윤리의식 등 정규임용 적격성을 검증하도록 절차 도입

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2조의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한시임기제공무원 총 채용기간 확대 (안 제3조의2, 제22조의5)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을 총 1년의 범위로 제한하던 것을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1년6개월 범위 내에서 전체기간에 대해 채용 가능토록 하여 채용 절차를 간소화

바. 필수보직기간 준수조치 수립 근거 마련 (안 제45조)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필수보직기간 이상 근무율 확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게 하기 위한 근거 마련

사. 경력경쟁채용자에 대한 전직제한기간 개선 (안 제29조)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자격증, 근무·연구 경력, 학위요건 등 경력경쟁채용자는 전직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4급 이하 행정직렬로의 전직은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강화

아. 특별승진 범위 확대 (안 제35조의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시 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자.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확대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가산대상 확대 (안 제32조)

국가공무원법 개정(‘15.11.19 시행)에 따라 확대되는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범위를 반영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는 징계사유 중 ‘급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법 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상을 명확히 함

차.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복무의무 신설 등 관리 강화 (안 제57조의5)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해 복무의무 미 부과하고 있던 것을 원칙상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의무복무하도록 근거를 신설

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활성화(안 제3조의2, 안 제18조, 안 제57조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대행을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충원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15~25시간에서 주15~30시간으로 확대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채용 시 별도정원 인정 근거를 신설

타. 직위해제 대상 급품비위 등 구체화 관련 (안 제31조, 안 제60조의2)

1) 국가공무원법(‘15.11.19시행)에서 위임한데 따라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 업무를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직위해제가 가능한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2) 조사·수사의 결과 무죄, 소청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무효·취소 등의 경우 직위해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하도록 근거 신설

파. 기타(안 제41조의2, 안 제57의2, 제57조의7)

그 외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남성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부상에 대해 공무상 질병휴직 적용하도록 하며, 병가 및 공무상 병가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속 장관의 민간전문가 파견 사실의 인사혁신처장 통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5. 10. 14. ~ 2015. 10. 24.)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되고, 위원은 채용후보자의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 계급인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하기 전과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채용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6조제3항”으로,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2조의5제1항 단서 중 “1년”을 “1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년”을 “1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호 중 “제20조제2항·제10항”을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2항·제10항”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공무원 또는 제57조의3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의 업무”로, “1년 이내”를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임용권자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4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과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 제2항 후단을 준용하고,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3조제2항 중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로,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임용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면직(면직 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 또는 퇴학처분을 받거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에 상당하는 비위를 받

복하여 저지른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5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5년”을 “6년”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그 조사 또는 수사 결과로 인해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그 직위해제 기간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그 수사결과로 인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

우에 조사 또는 수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또는 불기소처분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급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를 “(징계사유가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41조의2제4항 중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비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제2항 중 “1년(여성공무원은 3년)”을 “3년”으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25시간”을 “30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7조의4제1항 본문 중 “제20조제2항”을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휴가”를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병가”로 한다.

제57조의5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될 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법 제71조제1항1호·3호·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제57조의5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제57조의7 본문 중 “요양 승인”을 “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승인”을 “승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결정”으로, “공무상 요양기간”을 “공무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기간”으로 한다.

제8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별표 1의 행정직군의 행정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및 직 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행정	일반행정	무이사관	서기관					
		인사행정							
		법무행정							
		재정							
		국제통상							
		운수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발된 채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71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2항·제10항 ----- ----- 공무원 또는 제57조의3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의 업무 ----- ----- 1년 6개월 이내 ----- ----- ----- ----- -----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 -----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2. (생 략)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거나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 ----- 1.·2. (현행과 같음) 3.----- -----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임용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신 설>	
<신 설>	
<신 설>	

	공무원(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되고, 위원은 채용후보자의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 계급인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하기 전과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채용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생 략)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 17 -

- 19 -

공무원: 3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5년으로 한다.	---- 4년. -----	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사람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그 조사 또는 수사결과로 인해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그 직위해제 기간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그 수사결과로 인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3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5년으로 한다.	3. -----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략)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②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2.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2의2.·3. (생략)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조사 또는 수사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또는 불기소처분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
③ ~ ⑫ (생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급포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 다. (생략)	2. ----- (징계사유가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해당하는 ----- 가. ~ 다.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생략)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현행과 같음)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

무) ① ~ ③ (생 략)	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 ----- 3년 -----.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생 략)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⑪ (생 략)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② ----- ----- ----- ----- -----30시간 -----.
<신 설>	⑫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비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정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 ----- 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제57조의2(육아휴직) ① (생 략)	제57조의2(육아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	② ----- ----- ----- ----- -----	제57조의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	제57조의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

청권자는 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 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2항 ----- ----- ----- ----- ----- ----- ----- ----- ----- -----.	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	② -----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병가 ----- ----- ----- ----- -----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될 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한 법 제71조제1항1호·3호·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 제4항까지 -----

제57조의7(질병휴직)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원 <u>요양 승인</u> 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원 요양 <u>승인</u> 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u>공무상요양기간</u> 이 끝난 후에도 공무원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제57조의7(질병휴직) ----- ----- ----- --- <u>요양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u> ----- ----. ----- <u>승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결정</u> ----- ----- ----- <u>공무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기간</u> ----- -----.
<신 설>	제60조의2(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정책과	
연 락 처	02-2100-6750